



고객홍보처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청탁금지법)이 시행 1년 5개월 만에 개정됐다. '김영란법'으로도 익숙한 이 법은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1월 17일부터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.



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“3·5·5+10”으로 정의할 수 있다.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·선물·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현재 ‘3·5·10만 원’에서 ‘3·5·5만 원+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’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.

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식사·다과·주류·음료 등 음식물은 기존과 같이 상한액이 3만 원으로 유지된다.

선물은 이전처럼 5만 원까지 가능하지만, 농축수산물·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하다. 일반선물(5만 원 이하)과 농축수산물·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합산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하다.

단,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%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. 또한, 일반 선물과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이라고 해도 일반 선물이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.

축의금·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종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가용 한계가 낮아졌으나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 까지 가능하다. 축의금·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선물을 합산해 주는 것처럼 합산하여 10만 원 까지 가능하되 축의금·조의금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.

주의할 것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 가용액 범위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. 예를 들면 인허가 신청인, 지도·단속 대상자, 입찰 상대방, 인사나 평가·감사대상자 등 직무와 직접 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 음식물이나 선물,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. 명절이라고 담당 공직자에게 작은 마음을 선물로 보냈다가는 곤란에 처할 수 있음이다. 실제 1만 원, 3만 3,000원 등 소액이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2~3배 부과 받은 경우도 여럿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. 

Q&A

개정 청탁금지법 한눈에 보기

Q 승진이나 출판기념회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A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,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
Q 3만 원의 음식과 8만 원의 선물을 동시에 받은 경우 위반인가요?
A 두 가지 동시에 받을 경우, 가액기준은 가장 높은 금액(선물 : 10만 원)이하로 수수 가능합니다. 이 경우는 10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입니다.

Q 4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은 괜찮나요?
A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. 상품권은 얼마를 받았든 수수 가능 제외 사항이므로 위반입니다.

Q 경조사비로 15만 원을 수수한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?
A 가액기준(5만 원)을 초과한 금액만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 기준으로 처벌됩니다.